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8-06

수 원 지 방 법 원

제 3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0구합74505 취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redacted] 담당변호사 [redacted]

피 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redacted]

변 론 종 결 2021. 4. 29.

판 결 선 고 2021. 6.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0. 3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8-06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9. 27. B로부터 [redacted]시 [redacted]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7억 4,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20. 10. 14. 매매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20. 10. 14. 이 사건 아파트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 합계 15,710,200원(= 취득세 14,282,000원 + 지방교육세 1,428,2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redacted]시 [redacted]구청 소속 공무원은 2020. 10. 20. 원고에게 유선으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취득시점인 2020. 10. 14.에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부모와 동일세대로 되어 있고,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취득은 1세대 3주택(부모 소유 2주택 포함)[1] 취득이 되어 12%의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바, 원고가 1주택 취득자로서 한 기존의 취득세 신고·납부는 과소신고납부에 해당한다'는 안내를 해주었다.

라. 피고는 2020. 10. 22. 직권으로 원고에게 1세대 3주택 취득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 합계 82,878,900원[= 취득세 75,412,200원(가산세 포함) + 지방교육세 7,466,700원(가산세 포함)]의 납세고지를 하였고, 원고는 2020. 11. 25. 이를 납부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20. 10. 21. 피고에게 '원고는 주민등록표 기재 주소에 거주하지 않고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부모의 주민등록지에 합가한 것에 불과하여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취득을 1세대 3주택 취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당초 신고·납부한 내용으로 취득세 등을 경정해 달라'는 취지의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 등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0. 10. 30.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

1)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취득 당시 원고의 부친 E은 [redacted]시 F 단독주택 건물을, 원고의 모친 G는 [redacted]시 H 단독주택 건물을 각 소유하고 있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8-06

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을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취득 시점에 부모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원고는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부모의 주민등록지에 합가하였을 뿐이고 해당 주소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취득을 1세대 3주택 취득으로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28조의4 등은 소득세법상 '1세대의 정의와 범위'에 관한 규정 및 다주택자의 주택 취득세를 강화하여 투기목적의 주택거래를 억제하기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실질과세 및 형평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이다. 지방세법 제13조의2는 다른 자산에 대한 세율은 그대로 둔 채 부동산 중 일정 주택의 취득에 대한 세율만 인상하고 있는바 이는 특정 과세물건을 다른 과세물건과 차별하여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합리성을 결여하여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 또한 세대별로 주택수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함을 규정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배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8-06

1) 원고와 원고의 부모를 동일 세대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세대의 기준에 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1항은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아파트 취득시점인 2020. 10. 14.에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원고와 원고의 부모가 동일세대로 되어 있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이면 실제로 함께 거주하는지 여부나 일시적 합가 여부 등에 관계없이 1세대로 보아야 함이 위 법령의 해석에 부합하며, 달리 원고를 원고의 부모와 별도 세대로 볼 만한 근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취득을 1세대 3주택 취득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소득세법 규정은 국세인 소득세에 적용되는 법규정이고, 취득세는 지방세로서 지방세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취득세의 부과에 관하여 적용되는 '1세대'의 정의는 지방세법에 따라 적용·해석하여야 함이 타당하고, 취득세의 부과에 있어서 소득세법상 '1세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또한 조세평등주의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납세자의 담세능력에 상응하여 공정하고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의 납세의무자를 불리하게 차별하거나 우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말하는바, 지방세법 제13조의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등에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도록 규정한 취지는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하여 기존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가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에 따른 취득세율을 상향함으로써 실수요자 중심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8-06

주택보유를 유도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므로, 이 같은 법령의 내용이 합리성이 결여되어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거나 실질과세 및 형평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나머지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8-06

<별지>

관계 법령

■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3조의3을 적용할 때 주택의 범위 포함 여부, 세대의 기준, 주택 수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① 법 제13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8-06

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28조의6에서 같다),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1.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부모(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동거봉양(동거봉양)하기 위하여 30세 이상의 자녀, 혼인한 자녀 또는 제1호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인 자녀가 합가(합가)한 경우

3.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로서 「주민등록법」 제10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세대가 출국 후에 속할 거주지를 다른 가족의 주소로 신고한 경우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① 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법 제13조의3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이하 "주택분양권"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수를 말한다.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